

##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 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한 행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련함.

라. 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마.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3(건강친화기업인증 표시의 사용)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의4(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건강친화기업인증서(다

만,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
3. 건강친화기업 직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3조의6(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건강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그 밖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인증

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의7(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6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홍보·캠페인사업 등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을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신체활동지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3조의2(건강친화기업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
| <u>&lt;신 설&gt;</u> | <p><u>제3조의3(건강친화기업인증 표시의 사용)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u></p> <p><u>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u></p>                                                                                                         |

<신 설>

<신 설>

제3조의4(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건강친화기업인증서(다만,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영 제8조제1

항제7호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
3. 건강친화기업 직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등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신 설>

제3조의6(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건강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그 밖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3조의7(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의

과 같다.

③·④ (생략)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략)

② ~ ⑦ (생략)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  
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  
2와 같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  
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  
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  
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  
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

2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

-----

----- 별표 1의3

과 ---.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  
정) ①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의한 것만 해당한다.

1. (생략)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보건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2호의2서식-----  
-----  
-----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  
-----  
-----  
----- 별지 제2호의3서식-----  
-----  
-----  
-----  
-----  
-----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① -----  
-----  
-----  
----- 별지 제2호의4서식-----

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별지 제2호의5서식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홍보·캠페인사업 등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  
-----  
-----  
-----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신체활동지도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p>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 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4. (생략)</p> |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 지도에 필요한 장비</u></p> <p>4. (현행과 같음)</p> |
|---------------------------------------------------------------------------------------------------------------------------------------------------------------------|------------------------------------------------------------------------------------------------------------------------------------------------------|

[별표 1]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표시(제3조의3 관련)



건강친화기업의 영문 표기 Health Friendly의 이니셜 H와 F의 조합

- H(건강)과 F(친화기업)이 만나 모두의 행복한 웃음(Happy)을 만들어냄
- 전체적인 형태는 노동자의 건강한 웃음을 떠올리며 동시에 두 명의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창밖의 파란 하늘(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
- 두 개의 직선과 그 직선을 관통하고 이어 포용하는 하나의 곡선은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정부의 모습이며 하나가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두의 행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9개월  |

|        |                         |        |         |    |
|--------|-------------------------|--------|---------|----|
| 신청인    |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        |         |    |
|        | 대표자 성명                  |        | 업종      |    |
|        | 규모<br>[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
|        | 주소                      | 본 사    | (☎ - )  |    |
|        |                         | 사업장    | (☎ - )  |    |
|        | 담당 부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

| 현    황 | 자본금<br>(억원) | 종업원 수 (명) |     | 주력분야 | 매출현황(최근 3년간) |         |
|--------|-------------|-----------|-----|------|--------------|---------|
|        |             | 정규직       | 계약직 |      | 연도           | 매출액(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수상 및<br>인증획득 현황 | 수상 및 인증획득 명 |  | 수상 및 인증 일자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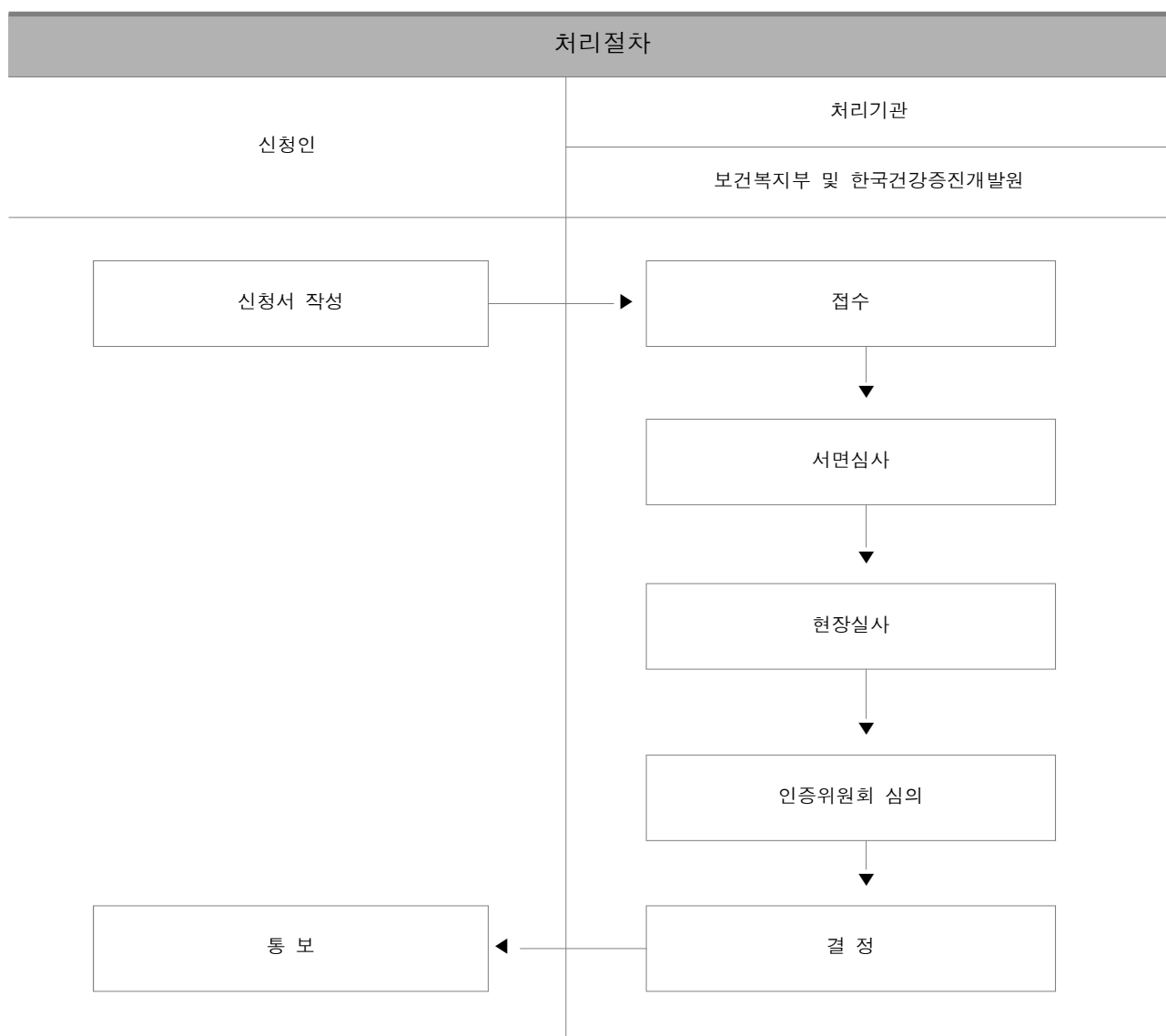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제2항·제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6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br>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br>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br>4.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br>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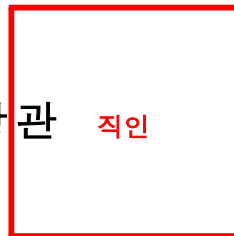
##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1. 기업명:
2. 소재지:
3. 유효기간:

위 기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한 건강친화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건강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장 내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

[illegible]

## 건강친화기업인증 대장

인증번호:

|         |         |               |       |
|---------|---------|---------------|-------|
| 업 종     |         |               |       |
|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본 사 소재지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인증일     |         | 인증유효기간<br>만료일 |       |
| 변 경 사 항 |         |               |       |
| 구 분     | 변 경 내 용 |               | 변 경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신 청 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본사 소재지 |          |
| 인증현황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 변경사항<br>또는<br>재발급 사유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건강친화인증서<br>2. 증명자료 1부 | 수수료<br>없음 |
|------|--------------------------|-----------|

### 처리절차

